ASTI라운지



최근 중기부의 출범으로 사업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이 고시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각 지원사업의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세부 온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더 전문적 해석이 필요하다면 산업부 고시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요령』,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다소 딱딱한 표현들 때문에 가급적 전달관 등에 질의를 통하여 명확하게 처리하기를 권한다.

본 내용에서는 사업비와 관련하여 위 기준들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연설명 또는 작성 팁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준들에 따르면 사업비의 구분은 직접비 및 간접비의 2개 비목으로 나뉘고, 2개 비목은 ① 인건비, ② 학생인건비, ③ 연구수당, ④ 연설.장비및재료비(재료비), ⑤ 연구활동비(활동비), ⑥ 연구과제추진비(추진비), ⑦ 간접비의 총 7개 세목으로 구분한다.

- ① 인건비에서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과 관련하여 참여율의 산정에 주의해야한다. 신규인력을 많이 기재하거나 인건비 비율을 춘다고 선정에 유리한 것은 없으며, 따라서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에 대하여 지급률 100% 이하로 지정하면 되고, 신규인력 채용예정는 해당인력의 인적사항 또는 미정으로 입력하면 된다.
- ② 학생인건비는 참여기관 대학을 지정할 경우 대학의 학생연구원들에게 매월 소액 집행할 인건비이므로 우리 중소기업과는 무곤세목이다.
- ③ 연구수당은 인건비(①현금/현물 및 ②학생인건비)의 10%를 개발후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도록 산정할 있는 비용이나, 중기부 지원사업에서는 비영리기관에만 해당되고 중소기업은 해당 없으므로 산정해서는 안된다.
- ④ 재료비는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항목과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이며, 시설 또는 장비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시작품•시저의 외주, SW개발 외주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장비구입비는 컴퓨터, 프린터 등 일상적 사무관리 용도에는 지출할 수 없고, 또한울, pH meter, 배양기 등은 본 개발뿐 아니라 다른 개발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범용성 장비의 구입이 허용되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시설•장비의 부가세 포함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3천만원 이상은 연구시장비 도입계획서, 1억원 이상은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해야 되며, 구입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특정 재료로 예를 들어 SS45C 압연강판 3천만원, 유전자 추출키트 2천만원, 돼지고기 1천만원 등의 극단적 산정은 그에 대한 명혹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삭감뿐 아니라 개발의 진실성 의문으로 선정에 악영향 우려가 있으니 심각한 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국민 세금임을 명심하여 반드시 실비 위주로 산정해야 한다.

- ⑤ 활동비는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해외전시 또는 해외출장 등에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과 관련 없는 해외학회 등의 출장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현실적 실비 위주로 산정해야 한다. 그 외에 연구원의 외부교육, 문헌구입(도서, 전자서, ISO, FDA 규격 등), 기술 컨설팅, 전문가 활용, 임상시험, 공인시험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용도에 지출할 수 있다. 만일 개발과 무두도서를 구입할 경우 환급 대상이며, 경영분야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경우도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빙하기 어려로 환급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⑥ 추진비는 국내출장, 회의, 사무용품, 초과근무식대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회의보고서의 작산 참석자들의 서명이 필요하고, 초과근무식대는 해당연구원이 평일 초과근무시 석식 또는 주말 및 공휴일의 식대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시 별도의 기록대장에 서명관리로 증빙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국내여비, 회의비 과근무식대 등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⑦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활용지원비만 해당되는데, 5적인 신용평가비 및 기술임치료와 특허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뿐일 것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장'(2억원/1년)은 중소기업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사업비현금의 20%(2억원중 0.45억원)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바우처' 제도가 있다. 바우처 비용은 활동비로 편성되어 있고, 학연에서심기술의 개발 및 시험, 디자인 또는 software 개발, 비임상시험 등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특히 평가지표(성능지표)와 관련된 공인시도 준정부기관의 공인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바우처로 계상할 수 있다.

실제 사업비 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 계속 발견되는 새로운 업무들을 지금 당장 완벽한 파악에 한계 U일 것이다. 그래서 사업비의 추정은 1주일 이상 여유를 가지고 계속 수정하며 편성해야 향후 사업 수행시 잦은 사업비 변경절차 없다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간혹 마감 직전에 사업비 편성을 하게 되면 선정되어도 개발에 애로가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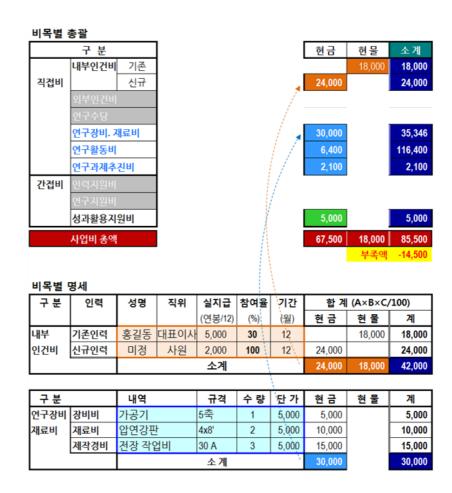
HOME ASTI안내 고객센터

2017-1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된 아래한글 기반의 사업비 도표는 계속적인 수정의 가변적 상황에 아래한글 자체함수를 활용하더라도 불이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양식의 도표를 한셀(한글과컴퓨터) 또는 엑셀(Microsoft사)로 복사하면 합산뿐 아니라 삽입과 삭제 등의 편 도 상당히 편리하다. 이때 필요한 함수는 sum, = 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average, counta, len, if, round, sumif 등의 복잡한 함수는 . 요구되지 않는다.

아래 <표>의 사업비 자동합산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사업비의 자동합산 예시



사업비의 지출에 있어서 직접비의 재료비는 내용상 검증이 쉽지 않아 상당액이 양산의 재료비 용도로 음성적으로 차용될지도 모. 데, 차라리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합법적 지출되도록 기준의 완화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장비가 없어 : 에 차질이 생기는데 다른 용도에도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범용성 장비구입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데스밸리(death valley)에서 생존성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정된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도 일부 지원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구조가 불확실해도 선정되는 우리 국책개발과제의 현실에서 R&D 사업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에 소액 인정을 검토해볼 필. 있어 보인다. 또한 현행 양산라인 지원에 '제품공정개선지원사업' 외에도 더 다양한 양산지원이 증가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조직력, 전년도 매출규모나 당기순손실 등을 병행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방법들을 정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십년 관례라는 명분보다 필요하다면 한국 상황에 맞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을 지원하 것이 과거 여러 대기업들의 회생에 수십조원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선급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원책들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을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개발의 품질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말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출된 사업비는 향후 5년 이내 모든 지출내역들을 추적하고, 사업비의 전용이 심될 경우 배임횡령 등의 사유로 형사적 책임문제로 일순간 패가망신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비의 활용은 항상 심각한 주의가 필요하

다음 컬럼(제6호)에서는 중기부 지원사업의 2017년부터 신설된 현장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본 내용의 수치와 기준 등은 정부의 정책 또는 부처별 전략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보기

이전글 🛕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사업성

다음글 🗸 🗆 현장평가